

# 1.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250호 2000. 1. 2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현행 무주택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있는 자에게도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한국주택은행에 위탁관리하던 것을 동 은행의 민영화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며, 아파트단지 내 소규모상가가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각 동별로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상가, 유치원 등 복지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중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주민이 주택”으로, “직장에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직장의 근로자”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

조제7호 및 제101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국민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이 경우 대출자산의 매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한국주택은행장은 제2항”을 “제2항”으로, “위탁받은 경우에는”을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0조의5제2항중 “한국주택은행장은”을 “기금수탁자는”으로, “한국주택은행”을 “기금수탁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과 제44조”를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제4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주택건설실적등”을 “기술인력 등”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전의 제1항중) “건설업면허”를 “건설업등록”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제6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업자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제39조의6제1항중 “종사하고 있는”을 “종사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7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을 “도지사·시장등은”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중 “재건축조합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를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을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로 하고, 동조제7항중 “각 동별”을 “각 동별(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로 한다.

제5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의3·제2호의4”를 “제2호의3”으로 하고, 동조제2호의 4 및 제2호의5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제5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제52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3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은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기금업무의 수탁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자은 국민주택기금사무의 수탁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기금수탁자를 지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